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 (허성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75

발의연월일: 2024. 9. 23.

발 의 자: 허성무・이병진・오세희

허종식 • 서미화 • 정진욱

윤건영 · 문금주 · 황정아

박용갑 • 이기헌 • 백승아

이재관 · 조인철 · 김현정

이광희 • 박해철 • 이재강

김 현 · 최민희 의원

(20일)

제안이유

우리나라는 최근 폴란드, 페루 등과 방산수출 계약을 완료하였고, 동유럽, 중동, 미국 등 방산수출 대상국을 다각화하기 위하여 노력하 고 있으며, 2024년에 방산수출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.

이렇게 방위산업이 신산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고, 방위산업의 성장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방위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조직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을 제정하여 방위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우리나라 방위

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방위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·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방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,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되, 필요한 곳에 국내외 지원을 둘 수 있도록 함(안제3조 및 제4조).
- 다.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, 홍보 및 국제협력 사업, 방위산업 수출진흥에 관한 지원사업, 방위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평가사업 등을 수행함(안 제6조).
- 라. 한국방위산업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,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(안 제7조 및 제9조).
- 마.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·운영하고, 정부는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

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(안 제12조 및 제13조).

바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·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).

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방위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·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방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방위력 향상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법인격) 한국방위산업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은 법인으로 한다.
- 제3조(설립) 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1. 목적
 - 2. 명칭
 - 3. 주된 사무소 및 지원(支院)
 - 4. 임원의 성명과 주소
 - 5. 공고의 방법
- 제4조(사무소)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 - ②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국내외 지원을 둘 수 있다.

- 제5조(정관)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 - 1. 목적
 - 2. 명칭
 - 3. 주된 사무소와 지원의 소재지
 - 4.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
 - 5. 임직원에 관한 사항
 - 6. 이사회에 관한 사항
 - 7.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
 - 8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
 - 9. 내부 규정의 제정 ·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- 10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-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6조(사업)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 - 1.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 수립 지원, 홍보 및 국제협력 사업
 - 2. 방위산업 수출진흥에 관한 지원 사업
 - 3. 방위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평가 사업

- 4.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
- 5. 방위산업 정보 및 통계의 조사,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업
- 6. 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
- 제7조(임원) ① 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
 -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원장을 제외한 그 밖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.
 - ③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다.
 - ④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하되, 상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 - ⑤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.
- 제8조(임직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다.
 -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 - 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② 임원이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- 제9조(이사회) ① 진흥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
- ② 이사회에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두되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선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제10조(원장) ① 진흥원에 원장 1명을 둔다.
 -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,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 -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한다.
- 제11조(직원의 임면)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 장이 임면(任免)한다.
- 제12조(재원) 진흥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·운영한다.
- 제13조(출연금) ①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 - ②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4조(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무상대부 등에 관한 특례)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

- 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으로 사용허가 ·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.
- 제15조(사업연도)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16조(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)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10개월 전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17조(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의 보고) ① 원장은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공인 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결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한다.
- 제18조(자료의 제공 요청) 진흥원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공 공단체,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- 제19조(비밀누설 금지)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0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방위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- 제21조(「민법」의 준용)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22조(공무원 의제) 진흥원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며, 「형법」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.
- 제23조(벌칙) 제1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24조(과태료)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 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① 방위사업청장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방위산업진흥원 설립위원회 (이하 "설립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 - ②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

- 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
- ④ 설립 당시의 진흥원의 임원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한다.
- ⑤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-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.
- ⑦ 진흥원의 설립에 드는 비용은 방위사업청장이 부담한다.